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및 주취자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경찰·의료·복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4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5
나.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5
다. 주취자 보호 관련 법규·조례 현황	8
라. 제정안에 대한 검토	13
마. 해외 사례	15
바. 관계기관 의견	19
2. 조문별 검토	22
가. 목적(안 제1조)	22
나. 정의(안 제2조)	24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27
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역할(안 제4조)	28
마. 인권의 존중(안 제5조)	30

바. 주취자 금지행위(안 제6조)	31
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33
아. 주취자의 보호조치 등(안 제8조)	34
자. 신원 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9조)	38
차. 긴급구호 조치의 통지 및 보고(안 제10조)	40
카. 긴급구호 조치기간 등(안 제11조)	42
타. 보호장구의 사용(안 제12조)	44
파.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조치(안 제17조)	46
하.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안 제13조)	48
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 등(안 제14조·제15조·제21조)	50
너.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비용 지원 등 (안 제18조~제20조)	52
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제19조)	55
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2조)	59
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23조)	60
버. 벌칙, 양벌 규정 및 과태료(안 제24조~제26조)	61

I.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주취자 대응에 경찰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발견·보호·치료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의료·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4) 경찰관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에서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신체·정신 상태, 주변 상황, 119구조·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 5)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거나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안 제9조).
- 6)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7) 긴급구호 조치의 기간을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주취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8)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2조).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 10)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 11) 시·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 12)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운영 등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0조).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주취자 관련 신고가 연간 97만건 수준으로 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만으로는 주취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 및 안전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 및 복지 분야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 경찰·의료·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긴급구호조치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나.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 26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기관의 설치 및 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안 제13조), 시·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취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안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및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

다음으로, 협력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주취자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 주취자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안 제8조 제1항), 이 경우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그리고, 긴급구호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긴급구호 조치 시 주취자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10조), 긴급구호 조치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안 제11조), 주취자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해서 경찰관이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총칙	[목적] 주취자 보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정의] 주취자,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보호장구 등을 정의(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
	인권의 존중(안 제5조)

구 분	내 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주취자의 의무	주취자의 금지 행위(안 제6조)
주취자 긴급구호 협력체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역할(안 제4조)
	주취자 보호조치 등(안 제8조)
	신원 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9조)
	긴급구호 조치의 통지 및 보고(안 제10조)
	긴급구호 조치기간 등(안 제11조)
	보호장구의 사용 등(안 제12조)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응급의료기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제13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안 제14조)
	인권침해 예방교육(안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21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업무 지도·감독(안 제18조)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6조)
	비용의 지원(안 제19조)
	비용의 부과·징수(제20조)
보칙 및 벌칙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23조)
	벌칙(안 제24조)
	양벌규정(안 제25조)
	과태료(안 제26조)

다. 주취자 보호 관련 법규·조례 현황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경찰청의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은 주취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서는 주취자를 단순주취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및 의식이 없는 만취자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대응요령을 정하고 있음. 단순주취자에 대해서는 자진 귀가를 권유하고, 필요시 가 족등 연고자(보호자) 확인 후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식은 있지만 의사표현·보행 상태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른 주취자(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등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음.

< 주취자 보호조치 유형별 요령 >

구 분	보호조치 요령
단순주취자	- 자·타해 우려 및 외상이 없는 단순주취자는 자진 귀가를 권유하고, 필요시 가족 등 연고자(보호자) 확인 후 인계 - 주취자가 노숙인인 경우 시·군·구청에 인계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 의식은 있으나 의사표현·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주취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이송 - 주취자 신원 및 연고자 확인 후 인계 조치를 병행하되, 119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비응급환자로 판단시 기온·날씨·장소 및 행동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경우 위험성 해소시까지 최소한도 내 보호조치
의식이 없는 만취자	의식이 없는 만취자나 출혈 등 외상이 있는 주취자는 119구급대와 공동대응하여 보건의료기관으로 이송

자료: 경찰청,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52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²⁾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구급대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는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② 구급대원은 법

서울특별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보호 지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는데,⁴⁾ 주요 내용은 ①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② 주취자 보호(구호) 시설의 설치·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 등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임.⁵⁾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4)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2025. 5. 7. 제정·시행)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5. 10. 30. 제정·시행)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 7. 5.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4. 9. 30. 제정·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12. 15. 제정·시행)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4. 3. 제정·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7. 11. 제정·시행)

5)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보호 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찰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 주취자와 관련된 112신고는 968,21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603,520건은 현장조치 등이 이루어졌고, 귀가 조치는 164,523건, 보호조치는 5,316건이 이루어졌으며 타기관 또는 병원 인계는 17,384건, 검거는 5,667건, 이미 해산하여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40,538건, 허위·오인 등으로 인한 비출동 종결은 131,262건이 이루어짐.

< 2024년 주취자 관련 112신고 종결 내역 >

전체 주취자 관련 신고(건)	종결 유형						
	현장조치 등	귀가조치	보호조치	타기관· 병원 인계	검거	이미해산 불발견	허위·오인 비출동 종결
968,210	603,520	164,523	5,316	17,384	5,667	40,538	131,262

자료: 경찰청

2024년 기준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곳이 있고,⁶⁾ 2025년에 2곳이 추가로 지정됨.⁷⁾ 부산광역시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부산 주취해소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72명

6)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황(2024년 기준)

국립의료원(서울 중구), 서울의료원(서울 중랑구), 보라매병원(서울 동작구), 적십자병원(서울 종로구), 부산의료원(부산 연제구), 대구의료원(대구 서구), 인천의료원(인천 동구), 중앙병원(울산 남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 수원시), 다니엘병원(경기 부천시), 성남시의료원(경기 성남시), 한양대병원(경기 구리시), 원주의료원(강원 원주시), 청주의료원(충북 청주시), 천안의료원(충남 천안시), 서산의료원(충남 서산시),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순천의료원(전남 순천시), 포항의료원(경북 포항시), 한라병원(제주 제주시)

* 출처: 경찰청,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180면

7) 서울동부병원, 목포의료원

의 취객을 보호함.⁸⁾

참고로, 경찰청은 200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을 제정했고, 2000년 10월 기준 전국에 154개의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했음. 그러나 2009년 9월 기준 주취자안정실은 전국에 23개소만 운영되었음.⁹⁾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은」은 2009년 7월 31일 폐지되었고, 주취자안정실은 2010년 12월 모두 폐지됨.

8) 올해 부산 지역에서 접수된 취객 관련 신고는 2만 1762건으로 하루 60건가량임.

출처: 부산일보 2025년 12월 30일 기사, “부산 주취해소센터 개소 1000일 앞뒤… 3년간 약 1600명 보호”

9) 하혜영, 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54호 12면, 2009. 12. 17.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 10월에 주취자 안정실에서 보호 중이던 주취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 실적이 지속 감소함.

라. 제정안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자 구호시설 및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주취자 구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취자 중 의료상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취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¹⁰⁾의 설치,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추가 지정,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119구급대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 일시적 주취행위에 대한 구호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획예산처¹¹⁾,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최근에는 응급의료 공백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10)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취자에 대한 일시 보호 등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에서 의견 제출

시점에서 주취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의료기관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주취보호센터 등의 운영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관계기관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들의 효과를 살펴본 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해외 사례¹²⁾

1) 일본

일본은 주취자 관련 법률로서 「술에 취해 공중에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¹³⁾이 1961년 6월 1일 제정됨.

동 법률에서는 경찰관이 만취로 인해 위해 우려 또는 응급 구호가 필요한 자를 경찰서, 병원, 구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유치장과 별도의 자해 및 부상방지시설을 구비한 주취자보호실에 보호하거나 경시청의 주취자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며 24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함.

2) 미국

경찰관과 응급구조팀이 주취자 처리를 담당함. 단순주취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경찰관서나 공공치료시설, 주취자의 자택으로 후송하고 있음. 만취자는 경찰에 의해 48시간 이내의 유치 및 응급치료를 위한 공공치료시설에 후송 후에 치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취자는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를 하고, 배우자, 의사, 병원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만취자에 대한 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취자는 최대 48시간 이내로 보

12) 하혜영, 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54호 20면~26면, 2009. 12. 17.

13)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호할 수 있으며, 형사 입건이 필요한 경우 수갑, 족쇄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영국

주취자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며, 범죄와 관련된 주취자는 죄질에 관계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하고, 응급 후송된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유치구금이 필요하면 경찰공의(Forensic Medical Examiner)의 진단 하에 구금 및 수사함. 요보호자는 36시간 이내에 구금이 가능하고 유치시설을 구비한 주취자 전용호송용 차량을 이용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영국의 「2003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에 의해서 법원은 알코올의존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알코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조치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4) 호주

주취자의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대상은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나 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

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가 됨.

주취자는 경찰서 유치장, 공공치료시설, 공인보호시설, 주취해소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최대 8시간 또는 승낙시 10시간 이내, 공인보호시설에서는 최대 15시간 또는 18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음.

호주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에서는 공인보호시설(licenced place)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취자가 공인된 보호자(carer)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함. 주취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반형사범으로 처리됨.

5) 프랑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주취자를 발견시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보호실에 강제 보호조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점 및 알코올중독규제법」이 있음.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발견된 자를 경찰관서 또는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보호실에 구인하여 유치할 수 있으며, 보호는 정신을 찾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장구사용에 있어서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타인·자기에게 위협한 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갑이나 족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에 규정되어 있음. 누구든지 거리, 철로, 카페, 카바레 또는 다른 공공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발견된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바. 관계기관 의견

1)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의료·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2) 기획예산처¹⁴⁾

일시적 주취행위에 대한 제재와 의료제공 및 구호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해외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주취자만을 위한 제재 및 보호시설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구호조치 의무화는 주취자 보호라는 경찰의 업무부담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고,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에서 제출한 의견

3) 소방청

소방청은 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119구급대의 단순주취자 이송 건수의 폭증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정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현재도 실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나, 응급실 내 주취자 난동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응급실이 마비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의정갈등 이후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응급실은 야간에는 의사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의학적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 주취자의 보호임무를 응급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5) 대한응급의학회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등의 지정은 단순 주취자의 응급센터

이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 소
모를 가중시킬 수 있음. 또한 주취자는 응급실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응급실 폭력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뿐 아니라 다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이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국민 중 술을 마신 비율은 45.1%이고, 음주 빈도는 월 1회 이하가 23.1%, 월 2~3회가 25.3%, 주 1~2회가 30.7%, 주 3~4회가 12.3%, 거의 매일이 8.6%를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음주 여부 및 빈도, 과거의 음주 여부 >

음주여부		음주빈도				
마심	안마심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45.1%	54.9%	23.1%	25.3%	30.7%	12.3%	8.6%

자료: 통계청 KOSIS 음주 여부 및 빈도, 과거 음주 여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방치되는 경우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이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조례¹⁵⁾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제정안을 통해 경찰·의료·복지 등 분야별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서울특별시¹⁶⁾는 주취자를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지, 단순 주취가 응급상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의견임.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주취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경찰관이 단순 주취자를 응급환자로 간주하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존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15)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2025. 5. 7. 제정·시행)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5. 10. 30. 제정·시행)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 7. 5.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4. 9. 30. 제정·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12. 15. 제정·시행)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4. 3. 제정·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2025. 7. 11. 제정·시행)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취자에 대한 일시 보호 등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종사자”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서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장구”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머리보호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구를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주취자,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보호장구 등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조를 통해 제정안의 보호대상인 주취자와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주취자의 정의 내용 “자신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부분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완결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조례」 제2조제1호¹⁶⁾ 등에 정의된 주취자 개념에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 저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소란행위 등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취자의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주취자에 대한 일시 보호 등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시설과 기관의 의미는 차이가 있으므로, 용어를 시설 또는 기관 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주취자’,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보건복지부는 주취자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구호조치 의무화는 주취자 보호라는 경찰의 업무부담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가하

16)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고,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 제2조제2호의 주취자 응급의료 기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음.

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주취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주취상태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정책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역할(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역할) ① 경찰공무원은 주취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주취자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주취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주취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정안 제4조제2항은 소방공무원이 주취자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이 법적으로 주취자 이송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이송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소방공무원은 현재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등의 업무¹⁷⁾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취자 이송 업무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현장 중심적 기관 간 역할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17) 소방청 공식블로그, 2022년 5월 6일 게시글 “소방공무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업무와 역할”
<https://blog.naver.com/safeppy/222722474874>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법적 업무¹⁸⁾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주취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현행 구급체계의 기능과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¹⁹⁾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주취자에 대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단순 주취 상태로 응급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송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임.

마. 인권의 존중(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정안 제5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주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제1항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취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이 과도한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정안 제5조를 통해 이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주취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바. 주취자 금지행위(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주취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질서 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욕설, 폭언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 2. 공공시설,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3. 경찰·소방공무원의 정당한 보호조치와 제지를 불응하는 행위 4. 도로·철도 등에서 차량통행이나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26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6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생략)

제정안 제6조는 주취자가 고성방가, 공공시설 훼손, 경찰·소방공무원의 정당한 보호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제정안 제26조제4항은 제6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주취자의 고성방가 행위, 공공시설 훼손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호(인근소란 등)²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 금지하고 있음.²¹⁾

20)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중·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제정안 제6조제3호는 주취자가 경찰공무원 등의 정당한 보호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취자가 보호조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등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취자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주취자의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주취자의 사고·범죄로 인한 본인 및 일반 국민의 피해 예방이 필요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과 「형법」 이외 금전상 제재(과태료) 도입으로 처벌 공백 보완과 함께 잠재적 위반행위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임.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7조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7조만으로는 주취자와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료기관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제정안 제7조를 통해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제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의견임.

아. 주취자 보호조치 등(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주취자 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취자에 대하여 언동 등 상태, 주변 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취자의 가족, 친지, 그 밖의 연고자(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주취자를 즉시 가족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 공원, 광장, 역사 및 그 밖의 공공장소
2. 기차, 전철, 버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공공 교통수단
3. 병·의원, 음식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에 대하여 언동 등 상태, 주변 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에는 119구급대원은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가 자해를 기도하거나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으로 소란·난동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제 정 안

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지속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주취자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정안 제8조제1항·제2항은 경찰관이 도로, 공원 등에 있는 주취자에 대해 응급구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하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제3항은 주취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하고,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등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를 통해 주취자에 대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하여 주취자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8조에 따른 구호조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 설치되고, 보건의료기관, 경찰공무원, 119 구급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공공구호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대상 긴급구호 요청과 각 기관의 인수 의무를 명시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긴급구호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이송하고, 주취자의 소란·난동 정도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제지 및 경찰관서 보호조치 등 주취자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주취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제정안 제8조를 통해 경찰이 주취자 보호 업무 이외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보건복지부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학적 응급상황이 아닌 주취자를 별도 법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서 구호하도록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소방청은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경찰관이 아닌 119구급대원으로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구급대원이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응급처치 또는 진료 필요성의 판단 주체로 규정할 경우, 기존 법령과 정합성이 저해되고 현장에서 업무 영역 침해 및 역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소방청은 경찰관이 응급처치 또는 진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 모든 주취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 지연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이미 현행법에 119구급대는 주취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구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주취자는 이송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²⁾

경기도 군포시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취자 긴급구호 및 응급처치 등은 관계 법령상 보건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정안 제8조제2항의 보건의료기관을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³⁾

22)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는 제정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의 이송업무는 공공구호기관이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까지로 한정된다는 의견임.

제정안 제8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며 난동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황으로 구급대원만 탑승하는 경우 주취 폭언, 폭행 등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경찰관이 동승하여 이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자. 신원 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신원 정보 수집 및 이용) ①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취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주취자 가족 등과 연락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신원 정보 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경찰관 및 구조·구급 대원이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제1항을 통해 경찰관 등이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가족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구호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정안 제9조제2항은 주취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23) 이외에 경기도 군포시는 보건소는 법령상 응급의료 수행 주체가 아니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의료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주취자는 판단력 저하, 돌발 행동, 폭언·폭행 가능성이 높아 대응 시 직원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보건소는 주로 행정 및 의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권력 행사 및 제압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임.

등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신속한 신원확인을 통한 보호자인계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규정으로 업무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긴급구호 조치의 통지 및 보고(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긴급구호 조치의 통지 및 보고) ①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분기별로 시·도 경찰청장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0조제1항은 경찰청장이 주취자에 대해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제정안 제10조제2항·제3항은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서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제2항과 유사한 취지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5항은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안전확보 및 긴급구호 등 조치 내용을 가족등에게 통지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규정하여 과도한 제재 등 위법한 보호조치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소방청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9조²⁴⁾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이라는 의견임.

2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카. 긴급구호 조치기간 등(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긴급구호 조치기간 등) ①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기간은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주취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다만, 주취자의 언동 등 신체·정신상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긴급구호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1조제1항은 긴급구호 조치는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의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제정안 제11조제2항은 주취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이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긴급구호조치는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주취자 공공
구호기관 등에 머물게 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최대 시간을 제한하고, 명시적인 의사
에는 반하여 실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
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은 주취자는 단시간 내 주취 상태 해소가 가능하고 권한 남
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치 기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제7항과 같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타. 보호장구의 사용 등(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보호장구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용된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2조는 경찰관이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취자가 소란·난동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주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보호장구는 주취자의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장구가 무엇인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제2항²⁵⁾은 무기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주취자 본인 및 타인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물리력 사용 한도와 중단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경찰관 제지 시 과잉 진압 등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임.

2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조치(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경찰관은 제8조에 따른 긴급 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취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7조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취자의 정보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²⁶⁾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7조를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상담·재활·치료 등 지역사회 건강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주취 관련 사고·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재활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하.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주취자 구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지역별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업무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은 주취자에 대한 일시 보호 등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부산과 제주에 설치되어 주취해소센터가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⁷⁾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전국에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7) SBS 뉴스 2024년 11월 2일 보도, “만취자 대처에 묘안?...’주취 해소 센터’가 보임”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은 그 수가 적으므로²⁸⁾ 향후에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예산처는 주취자만을 위한 제재 및 보호시설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시적 주취행위에 대한 제재와 의료제공 및 구호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해외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주취자를 위한 공공구호기관 설치나 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을 하기보다 기존의 공공구호 시설 등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²⁹⁾

경찰청은 응급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판단·의사능력이 저하된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도경찰청은 구호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구호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기관 위탁을 허용하여 지역별 특성과 재정적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긴급구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28)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으로 볼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는 부산 1곳, 제주 1곳 등 2곳이 있음.

참고로, 주취자 공공구호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있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8개소(서울 4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강원 2개소)가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9)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에서 제출한 의견

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 등(안 제14조·제15조·제21조)

제 정 안
제14조(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 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권침해 예방교육) 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취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주기·방법·내용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제14조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해당 종사자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필요하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주취자의 인권 보호 및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전문인력 배치로 긴급구호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상향된 구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제정안 제5조에 규

정된 주취자의 인권 존중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의무 교육
규정이 필요하며, 구호 과정에서 알게 된 주취자의 개인정보 및 민
감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해 오·남용 방지가 필요하
는 의견임.

너.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비용 지원 등
(안 제18조~제20조)

제 정 안
제18조(지도·감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검사의 기간, 범위, 조사·검사담당자, 조사·검사의 근거 법령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20조(비용의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8조).

제정안 제19조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8조를 통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 설립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는 주취자만을 위한 제재 및 보호시설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시적 주취행위에 대한 제재와 의료제공 및 구호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해외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주취자를 위한 공공구호기관 설치나 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을 하기보다 기존의 공공구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⁰⁾

제정안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이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제정안 제18조와 관련해서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30)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에서 제출한 의견

은 이 법에 따라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므로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제정안 제19조와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및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제정안 제20조와 관련해서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이 초래한 경우, 이용의 남용 방지 등 책임 부여를 위해 이용자 부담 원칙을 일부 적용해 공공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제19조)

제 정 안
제16조(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절차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정안 제16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6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응급 진료·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

2024년 기준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곳이 있고,³¹⁾ 2025년에 2곳이 추가로 지정됨.³²⁾

제정안 제19조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응급조치가 필요한 주취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1)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황(2024년 기준)

국립의료원(서울 중구), 서울의료원(서울 중랑구), 보라매병원(서울 동작구), 적십자병원(서울 종로구), 부산의료원(부산 연제구), 대구의료원(대구 서구), 인천의료원(인천 동구), 중앙병원(울산 남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 수원시), 다니엘병원(경기 부천시), 성남시의료원(경기 성남시), 한양대병원(경기 구리시), 원주의료원(강원 원주시), 청주의료원(충북 청주시), 천안의료원(충남 천안시), 서산의료원(충남 서산시),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순천의료원(전남 순천시), 포항의료원(경북 포항시), 한라병원(제주 제주시)

* 출처: 경찰청, 「2024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180면

32) 서울동부병원, 목포의료원

다만, 최근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응급의료 공백 상황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이 주취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응급처치 필요성의 신속한 판단 및 치료를 위해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보건복지부는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부적절하며, 의학적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현행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 되고, 불가피하게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진료가 종료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경찰관의 상주를 의무화하여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안 제16조에 따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 내 단순 주취자의 특정 응급실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의료인력을 소모시켜 춘각을 다투는 심뇌혈관 질환자나 외상환자 등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미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정안 제16조가 주취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제정안의

주취자는 의학적 응급도가 아닌 보호·관리의 대상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정안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통해 주취자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23조)

제 정 안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³³⁾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뇌물 범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취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 임직원의 업무 성격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제129조~제132조)’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버.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안 제24조~제26조)

제 정 안
제24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제출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취자의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6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제24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25조는 법인 등의 대표자, 종업원 등이 제정안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규정함.

제정안 제26조는 주취자 응급의료 또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적법한 기관 운영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무 부과 및 제재 수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